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집행부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3.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14.

기획행정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세무과장)
- 제출일자: 2023. 9. 1.(금)
- 회부일자: 2023. 9. 1.(금)
- 검토기간: 2023. 9. 1.(금) ~ 9. 7.(목)

2. 제안이유

- 2023. 7월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바, 우리구에서도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 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531호, 2020.3.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따른 경우로서, “재해”의 사전적 의미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3.7.19.)-

3. 주요내용

○ 감면 대상

- (사망자 및 유가족)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이하 “유가족”이라 함)

■ **우리구 호우 피해 사망자(2명):** 사망자 정○○, 이○○ (부부, 송현동 거주)
- 유가족: 구 정○○(송현동 거주), 정○○(수성구 거주)

○ 감면 세목 및 감면율 (2023년도에 한함)

-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 상기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를 면제한다.
 - 지방세법 제111조에 해당하는 세율의 100% 감면

- (주민세) 사업소분
 - 주민세 사업소분의 개인사업자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중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세율의 100% 감면

○ 2023년 감면 예상액 (2023년 부과액 추계)

- 감면 예상액 (구세 599,090원 정도)

지방세 합계	구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비고
7,695,270원	599,090원	7,096,180원	

○ 기타 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2023년도 과세분에 한하고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의결 후에 추가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한다.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지방세법」 제80조·제81조·제110조·제111조 등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기준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

5. 검토의견

- 2023년 7월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호우 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20, 2023.7.20.)에 따라 2023년도에 한하여 구세를 감면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건으로,

- 감면 대상은 3명(사망자2, 유가족1)이고, 재산세 100%·주민세 사업소분 100%로 감면 예상액은 구세 599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호우 피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구세 감면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

1 추진 배경

-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23.7.19.)
-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

2 지방세 감면 추진

1 지원 방식

- **쏠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
 -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대상자 파악 후 일괄제공 예정

2 감면 대상자 (사망자, 유가족)

-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유가족(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3 감면 내용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① 주민세분	• 사망자·유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특광역시, 시·군
	• 사망자·유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특광역시, 시·군
	• 사망자·유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시·군·구
② 지역자원세	• 사망자·유가족 (소방분 限)	7월, 9월	특·광역시, 도
③ 취득세	•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특·광역시, 도